
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함(안 제9조제3호·제4항 삭제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